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320
----------	-----

제출연월일 : 2020. 11. 20(금)

발 의 자 : 장문혁 의원

찬 성 자 : 이주용, 박찬원

지광천, 심현정

이명순 의원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6명으로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나.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심 사 계 획

1. 활동목적

-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건전재정 운영
- 신속한 의사진행 및 의결기관의 역할 강화

2. 심사안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도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활동기간

-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한다.

4. 구성

- 이주웅의원, 장문혁의원, 박찬원의원, 지광천의원, 심현정의원,
이명순의원

5. 운영계획

일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08 (화)	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09 (수)	제2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 ○ 개요설명(기획실장) ○ 검토보고(전문위원) ○ 계속비사업(기획실장) ○ 세입예산(재무과장) ○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 의회사무과, 기획실, 읍·면, - 행정과	
12.10 (목)	제3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 ○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행정지원국】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12.11 (금)	제4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 ○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행정지원국】재무과, 교육체육과 -【경제건설국】문화관광과, 허가과	
12.12 (토)	휴회	○ 공휴일	
12.13 (일)	휴회	○ 공휴일	
12.14 (월)	제5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 ○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일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15 (화)	제6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 ○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 【경제건설국】건설과, 도시과 - 【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12.16 (수)	제7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 ○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12.17 (목)	제8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 ○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 【경제건설국】환경위생과 -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12.18 (금)	제9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사)	
12.19 (토)	휴회	○ 공휴일	
12.20 (일)	휴회	○ 공휴일	
12.21 (월)	제10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조정, 심사보고서 채택)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조정, 심사보고서 채택) 3. 2021년도 예산안 (예산안조정, 심사보고서 채택)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설치)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의 심사를 포함한다.

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